

읍면간행정구역조정에따른의견청취의견

의안 번호	301
----------	-----

제출년월일 : 1997. 7.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제안이유

- 당초 문산읍·파주읍간 행정구역 경계는 동문천의 지류에 따라 형성되어 왔으나 이후 동문천의 지류변경과 아울러 제방의 축조로 동문천을 사이에 두고 파주읍 봉서리 일부가 문산읍지역에 위치함으로써 이를 조정하고자 도 승인신청을 위한 시의회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것임

☐ 주요골자

- 파주읍 봉서리 일부 ⇒ 문산읍 문산리로 편입

(필지 / m')

계	전	답	대	제 방	하 천
17 11,103	2 706	2 1,229	1 1,423	2 3,041	10 4,704

☐ 관계법령 발췌서

- 지방자치법 제 4 조, 제 3 항
- 행정구역조정업무처리에 관한 규칙 제11조

☐ 기타 참고사항

- 문산읍·파주읍간 경계조성 조서

④第7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設置된 市에는 都市의 形態를 갖춘 地域에는 洞을, 그밖의 地域에는 邑·面을 두되, 自治區가 아닌 區를 둘 경우에는 당해 區에 邑·面·洞을 둘 수 있다. <新設 94·3·16, 94·12·20>

第2節 地方自治團體의 管轄區域

第4條 (地方自治團體의 名稱과 區域) ①地方自治團體의 名稱과 區域은 中전에 의하고 이를 變更하거나 地方自治團體를 廢置·分合할 때에는 法律로써 정하되, 市·郡 및 自治區의 管轄區域 境界變更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②第1項의 규정에 의하여 地方自治團體를 廢置·分合하거나 그 名稱 또는 區域을 變更할 때에는 관계地方自治團體의 議會(이하 “地方議會”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自治區가 아닌 區와 邑·面·洞의 名稱과 區域은 中전에 의하고, 이를 變更하거나 廢置·分合할 때에는 內務部長官의 승인을 얻어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로 정한다.

④里의 區域은 自然의 村落을 기준으로 하되, 그 名稱과 區域은 中전에 의하고 이를 變更하거나 廢置·分合할 때에는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로 정한다.

⑤洞·里에 있어서는 行政能率과 住民便宜를 위하여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하나의 洞·里를 2개이상의 洞·里로 운영하거나 2개이상의 洞·里를 하나의 洞·里로 운영하는 등 行政運營上 洞·里(“行政洞·里”라 한다)를 따로 둘 수 있다.

⑥第5項의 行政洞·里에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下部組織을 둘 수 있다.

第5條 (區域變更, 廢置·分合時의 事務와 財産의 承繼) ①地方自治團體의 區域變更이나 廢置·分合이 있는 때에는 새로 그 地域을 관할하게 된 地方自治團體가 그 事務와 財産을 承繼한다.

②第1項의 경우에 있어서 地域에 의하여 地方自治團體의 事務 및 財産을 구분하기 곤란한 때에는 市·道에 있어서는 內務部長官이, 市·郡 및 自治區에 있어서는 特別市長·廣域市長·道知事(이하 “市·道知事”라 한다)가 內務部長官의 승인을 얻어 그 事務와 財産의 限界 및 承繼할 地方自治團體를 지정한다. <改正 94·12·20>

第6條 (事務所의 所在地) ①地方自治團體의 事務所의 所在地와 自治區가 아닌 區 및 邑·面·洞의 事務所의 所在地는 中전에 의하고, 이를 變更하거나 새로 設定하는 경우에는 市·道에 있어서는 內務部長官의, 市·郡 및 自治區에 있어서는 市·道知事의 승인을 얻어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로 정하며, 自治區가 아닌 區와 邑·面·洞에 있어서는 그 市·郡 및 自治區의 條例로 정한다. 이 條項에 있어서의 洞은 第4條第5項의 規定에 의한 行政洞을 말한다. <改正 94·12·

② 제 1 항의 실행조서서를 제출받은 시·도지사는 이를 검토하고 그 검토결과를 당해연도 3월 31일까지 내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승인신청의 서식)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정구역의 조정을 승인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식에 의한다. 다만, 사무소의 소재지의 변경을 승인신청하는 경우에는 기본계획서와 조례안을 첨부하여야 한다.

1. 명칭변경의 승인신청 : 별지 제 1 호서식
2. 관할구역 경계변경의 승인신청 : 별지 제 2 호서식
3. 자치구가 아닌 구 설치의 승인신청 : 별지 제 3 호서식
4. 읍·면·동설치의 승인신청 : 별지 제 4 호서식

제11조 (지방자치단체의회의 의견서 첨부)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의 행정구역 조정의 승인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회의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2조 (검토·승인) 내무부장관은 제 2 조·제 3 조·제 7 조 및 제 8 조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함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검토한 후 승인하여야 한다.

1. 국가의 기본정책방향과의 합치여부
2. 국토의 균형발전 또는 지역개발 측면에서의 타당성 여부

제13조 (승인서의 서식) 내무부장관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승인신청을 받아 이를 승인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1.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의 명칭변경의 승인 : 별지 제 5 호서식
2.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의 관할구역 경계변경의 승인 : 별지 제 6 호서식
3. 자치구가 아닌 구 설치의 승인 : 별지 제 7 호서식
4. 읍·면·동설치의 승인 : 별지 제 8 호서식
5. 시·도사무소 소재지 변경의 승인 : 별지 제 9 호서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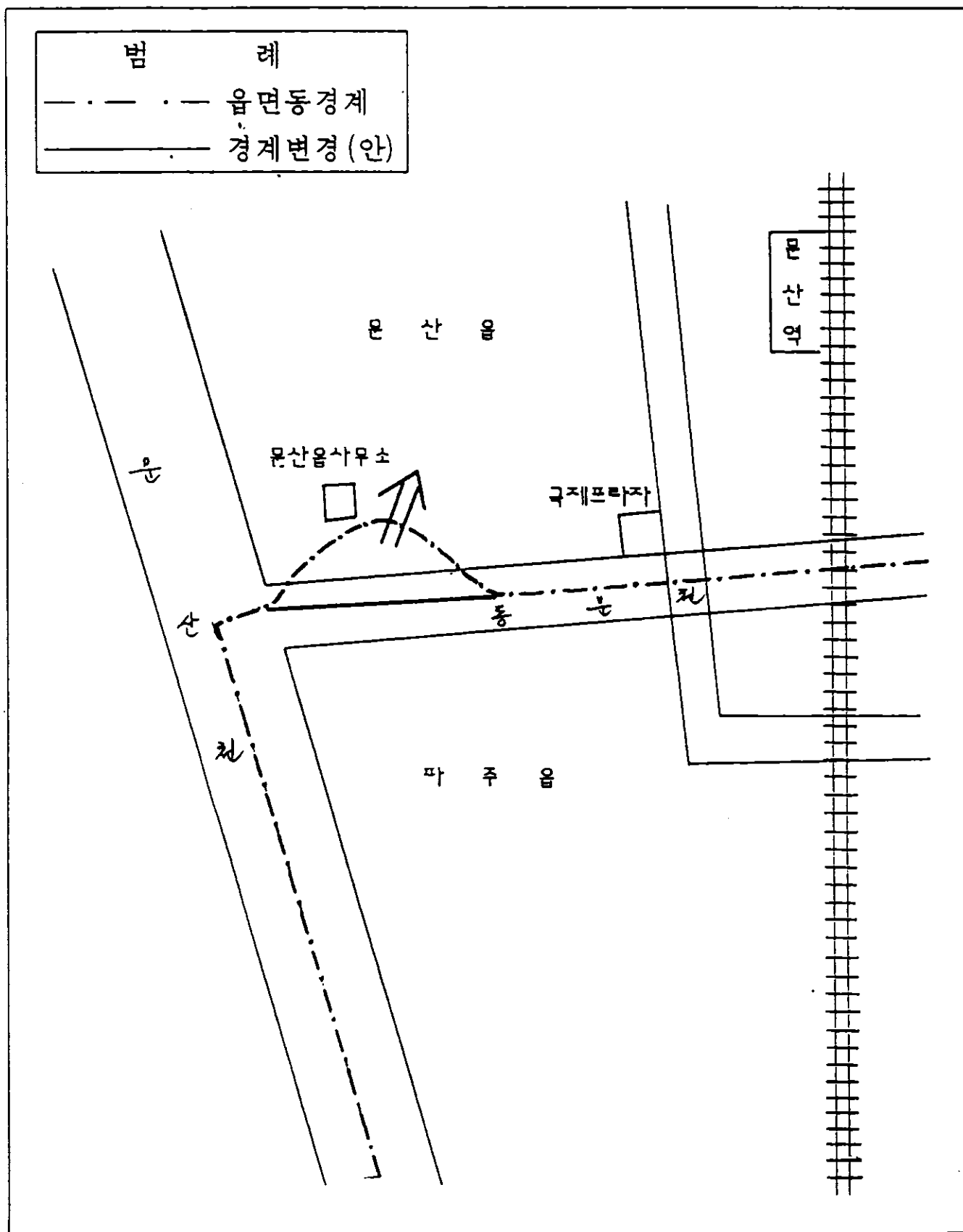
제14조 (인구 및 가구의 조사시점) 행정구역의 조정과 관련하여 사용되는 인구와 가구는 주민등록표상의 인구 및 가구를 사용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인구주택총조사(센서스) 및 상주인구조사 결과를 사용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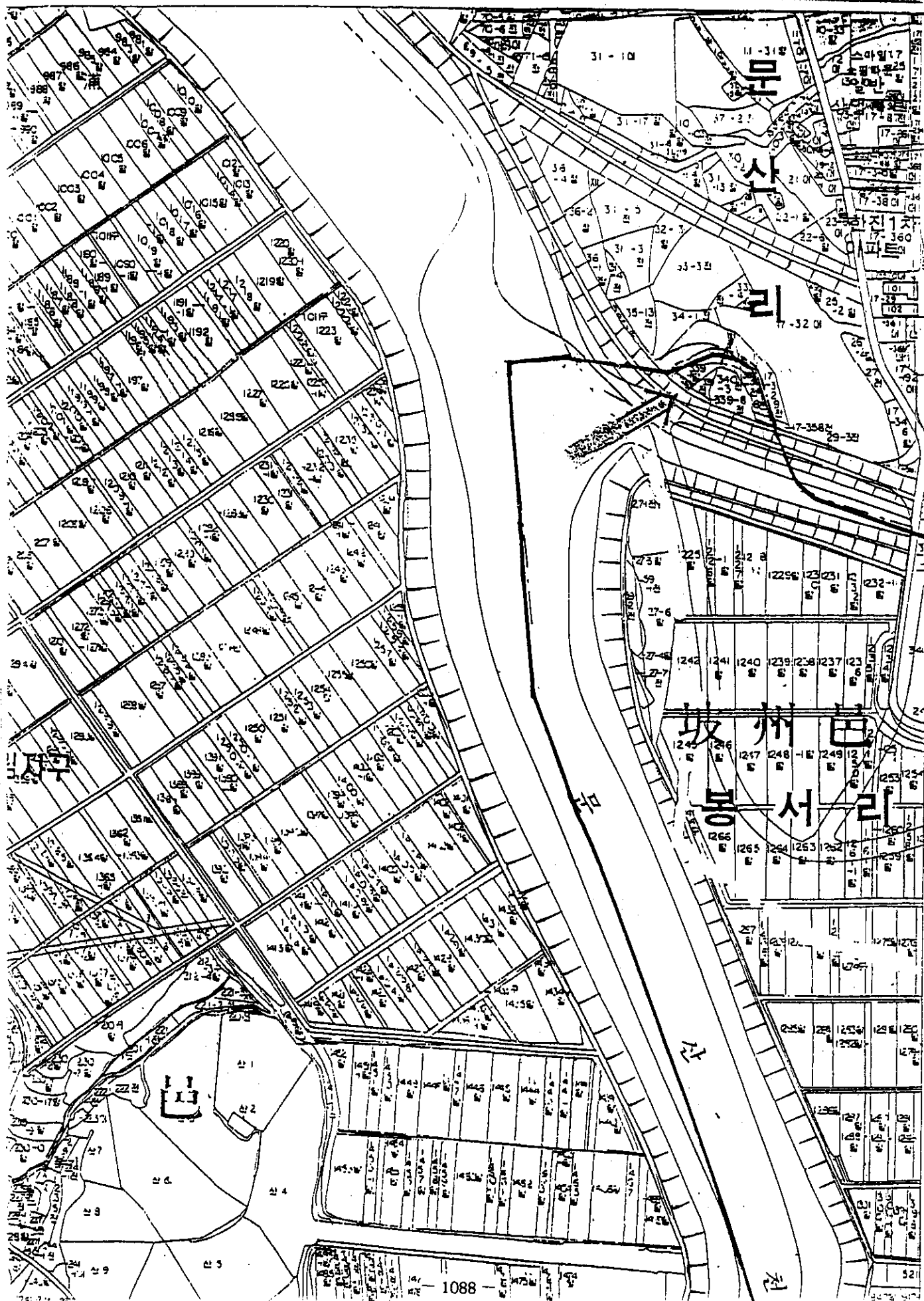
제15조 (자치법규 및 각종 공부정비) 내무부장관은 행정구역이 조정된 경우에는 자치법규 및 각종 공부의 정비가 차질없이 수행되도록 지방자치단체에 지침을 주어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읍면간 경계변경 계획도





지 번 별 조 서

1. 지목별 조서

지 목 별	필 지 수	지 적	비 고
계		11, 103 m ²	
전	2	706 m ²	
답	2	1, 229 m ²	
대	1	1, 423 m ²	
제방	2	3, 041 m ²	
하천	10	4, 704 m ²	

2. 필지별 조서 : 붙 임

필 지 별 조 서

시군별	읍면별	리 명	지 번	지 목	지적 (㎡)	비 고
파주시	파주읍	봉서리	337- 5	답	479	파주시
			337- 6	하천	129	국 (건설부)
			337- 8	하천	137	국 (건설부)
			337- 9	하천	853	국 (건설부)
			339	전	462	파주시
			339- 1	대	1, 423	파주시
			339- 2	제방	1, 543	국 (재경원)
			339- 6	하천	948	국 (건설부)
			339- 8	전	244	국 (재경원)
			339- 9	하천	164	국 (건설부)
			339-10	하천	181	국 (건설부)
			339-11	답	750	파주시
			339-12	하천	153	국 (건설부)
			340- 3	하천	1, 437	권인행
			340-31	제방	1, 498	국 (건설부)
			340-44	하천	326	파주시
			340-45	하천	376	파주시